

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(제16조의3제1항관련)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×정년잔여월수
2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$\times [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]$
3. 10년 초과인 자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비 고 :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